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 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제65호
----------	------

제출연월일 2004. 11. 29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 관한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공중화장실등에 관한법률·같은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자·관리자 책무 규정

○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편의용품의 비치, 최적의 시설상태 유지

나. 상위법령에서 정한 이외의 설치기준 규정

○ 배수·방수에 관한사항 및 청소도구함 등의 설치

다. 위탁관리 및 유지관리 비용 지원근거 마련

라.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개방기준 규정

○ 옥외 : 항상 개방

○ 옥내 :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지정한 시간

마. 이동식화장실의 설치기준 규정

○ 남·여자용 구분 따로 설치, 환풍시설 설치, 안내표지판 부착

바. 유료화장실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과 준수사항 규정

4.주요토의 과제: 없음

5.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담당관

라. 기타

1) 입법예고(2004. 10. 22 ~ 2004. 11. 13)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법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

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영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 (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6조(위탁관리 등) ①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시장은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공중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의 청소 실시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 실시
3. 수시로 시설을 점검·정비, 도색이 필요한 경우 연1회 이상 도색 실시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내부에 설치되어 상시 개방이 어려운 화장실은 시설의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지정한 시간에 한하여 개방 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의 지정은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②개방화장실을 지정한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고,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 설치
2.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따로 설치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의 설치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안내표지판 부착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 지정
2.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 강구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한 주기적 소독 실시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사람은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제16조(준수사항)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의 초과징수 금지
3. 관리인을 두어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시사항 이행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 화장실의 승인을 받는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13조 내지 제15조)을 삭제하고, 제6장을 제5장으로 한다.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 때에는 그중 금액이 많은 과태료로 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때	법 제21조제1항 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때	법 제21조제1항 제2호			
가. 법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제1항 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때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때		10	20	30
4.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때	법 제21조제1항 제4호	10	20	30
5.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때	법 제21조제2항	5	10	20

【별지 제1호 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전 경 사 진</p>											
소재지						화장실 명칭					
지역구분				설치 년도	관리책임 공무원		소속				
설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급				
	관리주체			성명							
관리인		(전화번호:)				월평균 이용인원					
규모	부지 (m ²)	화장실 면적(m ²)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 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년월일	관리사항	금액 (천원)	년월일	관리사항	금액 (천원)	년월일	관리사항	금액 (천원)		

【별지 제2호 서식】

유료화장실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설현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m ² , 화장실 면적 : m ²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사천시공중화장등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유 료 화 장 실 신 고 필 증								
대 표 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p>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사람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사 천 시 장 인</p>								

관 계 법 령 발 취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중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라 함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다중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유료화장실"이라 함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 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지원시설중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6.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
7.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
8. 도시철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역
9.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
10.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사업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13.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14.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1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16.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제7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휴식시설·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의 처리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다.

④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공중화장실의 관리) ①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자(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개방화장실) ①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의 출입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당해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와의 협의를 거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 (유료화장실) ①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14조 (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
3. 영리목적의 광고물을 표시 및 설치하는 행위
4. 그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제18조 (조례에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중 화장실등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명령에 불응한 자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부착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자
- ②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공중화장실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공중화장실등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설치 장소 또는 시설의 여건상 영별표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 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관련)

1. 전체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센티미터 이상, 긴 변이 115센티미터 이상(서양식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1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소변기는 1인의 점용폭을 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칸막이와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4.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8.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및 세면기 등의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급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동양식 변기와 서양식 변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12. 여자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13.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비고

1. 시·군 또는 구는 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동양식 변기”라 함은 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하고, “서양식 변기”라 함은 걸터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한다.

관광진흥법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6. "觀光地"라 함은 自然的 또는 文化的 觀光資源을 갖추고 觀光客을 위한 기본적인 便宜施設을 設置하는 地域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觀光團地"라 함은 觀光客의 다양한 觀光 및 休養을 위하여 각종 觀光施設을

綜合的으로 開發하는 觀光據點地域으로서 이 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10. "支援施設"이라 함은 觀光地 또는 觀光團地의 운영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觀光地 또는 觀光團地내외의 施設을 말한다.

第50條 (觀光地의 지정등) ① 觀光地 및 觀光團地(이하 "觀光地등"이라 한다)는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의 申請에 의하여 基本計劃 및 圈域計劃을 기준으로 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이 지정한다.

② 文化觀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觀光地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 國土利用管理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都市地域으로 決定·告示된 地域을 觀光地등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觀光地등의 지정의 取消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觀光地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第2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協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文化觀光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 지정의 取消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52條 (造成計劃의 수립등) ① 觀光地등을 관할하는 市·道知事は 造成計劃을 작성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觀光團地의 경우에는 觀光團地를 開發하고자 하는 政府投資機關등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公共法人 또는 民間開發者(이하 "觀光團地開發者"라 한다)가 造成計劃을 작성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文化觀光部長官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 文化觀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造成計劃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市·道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造成計劃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다만, 觀光團地의 造成計劃은 文化觀光部長官이 告示하여야 한다.

④ 民間開發者가 觀光團地를 開發하는 경우 第55條第13號, 第58條 및 第59條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성계획상의 조성대상 토지면적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잔여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만법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港灣"이라 함은 船舶의 出入, 사람의 乘·下船, 貨物의 荷役·보관 및 처리 등을 위한 施設이 구비된 것을 말하며 指定港灣 및 地方港灣으로 구분한다.

2. "指定港灣"이라 함은 國民經濟와 公共의 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港灣으로서 大統領令으로 그 名稱·位置 및 區域이 지정된 港灣을 말한다.

3. "地方港灣"이라 함은 指定港灣외의 港灣으로서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가 그 名稱·位置 및 區域을 지정·公告한 港灣을 말한다.

4. "港灣區域"이라 함은 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港灣의 區域을 말한다.
5. "臨港區域"이라 함은 第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臨港地域과 都市計劃法 제 33조제1항제7호의 規定에 의한 施設保護地區(港灣施設의 보호를 위한 것에 한한다)를 말한다.
6. "港灣施設"이라 함은 港灣區域안에 있는 다음 各目的 1에 해당하는 施設과 港灣區域밖에 있는 다음 各目的 1에 해당하는 施設로서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이하 "管理廳"이라 한다)가 지정·告示한 것을 말한다.

가. 基本施設

- (1) 航路·碇泊地·船溜場·船回場등 水域施設
- (2) 防波堤·防砂堤·波除堤·防潮堤·導流堤·閘門·護岸등 外廓施設
- (3) 道路·橋梁·鐵道·軌道·運河등 臨港交通施設
- (4) 岸壁·物揚場·棧橋·돌핀·선착장·램프 등 계류시설

나. 機能施設

- (1) 삭제 <2001.5.24>
- (2) 船舶의 入·出港을 위한 航路標識·信號·照明·港務通信施設등 航行補助 施設
- (3) 固定式 또는 移動式 荷役裝備·貨物移送施設·配管施設등 荷役施設
- (4) 待合室·旅客乘降用 施設·小荷物取扱所등 旅客利用施設
- (5) 倉庫·野積場·컨테이너裝置場 및 컨테이너操作場·싸이로·貯油施設·貨物터미널등 貨物の 流通·販賣施設
- (6) 船舶을 위한 給油·給水施設 및 얼음의 生産供給施設등 船舶補給施設
- (7) 삭제 <2001.5.24>
- (8) 삭제 <2001.5.24>
- (9) 港灣의 管制·弘報·保安施設

다. 지원시설

- (1) 보관창고·集配送場·복합화물터미널·整備庫 등 배후유통시설
- (2) 선박기자재·船用品 등의 보관·판매·전시 등을 위한 시설
- (3) 화물의 조립·가공·포장 등을 위한 시설
- (4) 공공서비스·시설관리 등 항만관련 업무용 시설
-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자 및 항만종사자의 휴게소·숙박소·진료소·위락시설·연수장·주차장·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 및 편의제공시설
- (6) 항만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벤처지원 등 연구시설
- (7)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항만기능의 지원을 위한 시설

라. 港灣親水施設

- (1) 낚시터·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 및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해양레저용 기반시설
- (2) 해양박물관·어촌민속관·해양유적지·공연장·학습장·갯벌체험장 등 해양문화·교육시설
- (3) 해양전망대·산책로·해안녹지·조경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 (4) 인공해변·인공습지 등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7. "항만배후단지"라 함은 무역항의 항만구역 및 臨港區域 안에서 지원시설과

港灣親水施設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 및 항만관련 산업활동을 증진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자의 편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개발하는 지역을 말한다.

8. 삭제 <2001.5.24>

9. "港灣運營電算網"이라 함은 港灣管理運營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港灣의 科學的 관리를 위한 政策決定을 지원하며 港灣利用者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設置·운영하는 綜合電算處理組織을 말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障碍人등"이라 함은 障碍人·老人·妊産婦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移動과 施設利用 및 情報에의 接近등에 불편을 느끼는 者를 말한다.
2. "便宜施設"이라 함은 障碍人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移動과 施設利用의 편리를 도모하고 情報에의 接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施設과 設備를 말한다.
3. "施設主"라 함은 이 法에서 정하는 對象施設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당해 對象施設에 대한 別도의 管理義務者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4. "施設主管機關"이라 함은 便宜施設의 設置 및 운영에 관하여 指導와 監督을 행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및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道路"라 함은 道路法 第2條 및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 및 그 附屬物과 地下道路의 구조 및 設置에 관한 建設交通部令에서 規定하고 있는 地下道路를 말한다.
6. "公園"이라 함은 自然公園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自然公園 및 同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公園施設과 都市公園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都市公園 및 同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公園施設을 말한다.
7. "公共建物 및 公衆利用施設"이라 함은 不特定多數人이 이용하는 建築物, 施設 및 附帶施設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建物 및 施設을 말한다.
8. "共同住宅"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2호의 規定에 의한 共同住宅을 말한다.
9. "交通手段"이라 함은 自動車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 鐵道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鐵道の 運行에 사용되는 車輛 및 都市鐵道法 第3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都市鐵道の 運行에 사용되는 車輛을 말한다.
10. "通信施設"이라 함은 電氣通信基本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 設備와 郵便法 제14조의 規定에 의한 郵便物등 通信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施設을 말한다.